

2019. 5.8.~5.13. / 3일간

제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고재진 의원

▪ 제안이유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위생과 신설 (안 제3조제2항제2호)

- 산업건설위원회 : 환경위생과 삭제 (안 제3조제2항제3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9. 5. 8.)

2.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오원석 의원

▪ 제안이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형식에 맞지 않거나 부정확한 표현, 오탈자 등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설립목적)’ 을 ‘제1조(목적)’ 으로 정정하고, ‘ (이하 “의회” 라 한다)’ 를 삭제

○ 제3조(의석배정) 제2항 ‘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과장’ 으로 수정

- 제4조(개회식) 제1항 ‘의회는’ 을 ‘ ‘장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으로 수정
- 제5조(휴회) 제2항 ‘군수’ 를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수정
- 제22조(수정동의) 제1항 ‘연서’ 를 ‘함께 서명’ 으로 수정
- 제48조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를 ‘의회운영위원회’ 로 수정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4항 및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4항 ‘깍연행위’ 를 ‘담배 피는 행위’ 로 알기 쉽게 수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8. 5. 8.)

3.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심민섭 의원
- **제안이유**
호적법 폐지(‘08.1.1.)에 따른 호적법 상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설립목적) ‘본적’ 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로 정정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금원’ 을 ‘금액’ 으로, 제2항 ‘장성군 출신으로’ →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로 바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 2018. 5. 8.)

4.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이태신 의원

▪ 제안이유

장성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 처리 가능

○ 사무 지원 및 준용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일자문회의장성군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 범위내 지원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의회 회의 및 통일 행사에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적 사무 지원 가능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의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에 협조하도록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5. 13.)

5.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김희식 의원

▪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

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센터 조직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센터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 센터의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5. 13.)

6.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법인을 실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재지(광주)와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내용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
 - ▶ (현행) 등록된 장성군에 소재한 법인
 -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
- 시행계획 수립 : 삭제(안 제5조)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되지 않아 해당 조항 삭제
-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6조)
 -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5. 13.)

7.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제출일자 : 2019. 4. 30.

- 제안자 :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7.12.29.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하여 정비 추진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업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사용계약 시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7조)

- 푸드트럭존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9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3. 15.)